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인천지방법원 2019. 5. 3. 선고 2018노29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인 천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8노2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혁(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근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고정1691 판결

판결선고 2019. 5. 3.

주 문

원심판결 중 2017. 3. 3.자 및 2017. 3.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17. 4.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38세)와 2012. 9. 11.경 이혼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3.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17.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6. 16:0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그리고나랑한번해', '사 진보고.손으로해결하게'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17.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13:5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나랑사귀자'라는 E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맥락과 상관없이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게다가 피고인과 B는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전후 피고 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일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기는 하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 1) '하자', '그리고나랑한번해'라는 문자메시지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는 하나 통상적으로 성인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고, 이 사건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피고인은 이와 다른 의미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진보고.손으로해결하게'라는 문자메시지는 그 맥락상 B에게 자위행위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극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 2) 피고인과 B가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이혼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문자를 보냈을 무렵에는 양육비 문제로 B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 3) 피고인은 B와 양육비 또는 자녀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맥락 없이 위와 같이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야한 사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메시지들은 B와 같은 30대 후반 여성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기준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특히 과거에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유로 내밀한 성적 부분을 공유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경우 그 정도는 더 심할 수 있다).
- 4) B 역시 '또라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해'라고 함으로써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
- 5)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랑 사귀자'라는 메시지(2017. 4. 12.자 범행)의 경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해온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문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대화의 맥락 내지 통상적인 사용례에 의하더라도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메시지로 인하여 B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7.3.3.자 및 2017.3.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2017. 4. 1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제2의 가. 1) 및 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 1. E 및 문자메시지 캡쳐, E 대화 내역 텍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상대적으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성학(재판장) 황지애 조성훈